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63호 2013년 4월 11일(목)

## 공 고

-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2013년 『아동보호구역지정』 및 『아동보호구역내 CCTV 설치』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4월 11일

속 초 시 장

### **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**

1. 행정예고할 내용 :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  -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및 아동·청소년센터에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CCTV를 설치하여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시 조속한 조기대응하고자 아동보호구역지정장소 및 CCTV 설치장소를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
3. 관련근거
  -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
  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 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4. 행정예고기간 : 2013. 4. 11 ~ 2013. 4. 30까지 (20일간)

5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sokcho.gangwon.kr>)

6. 아동보호구역지정 : 8개소

대 상 지	소 재 지	선정사유	비 고
1.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	교동 1025-1 (해상공원 입구)	아동,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	어린이놀이터
2.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놀이터	금호동 482-5 (단지 놀이터)	야간 청소년 우범지역	"
3. 영랑동 놀이터	영랑동 448-118 (구 영랑시장)	사건사고등 빈번 (2건)	마을내놀이터
4. 청초호 유원지	조양동 1544-2 (엑스포공원 분수대)	아동,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	근린공원
5. 청초호유원지	조양동 1544-2 (엑스포공원 농구장 주변)	아동,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	"
6. 엑스포타워	조양동 1544-2 (영재어린이집 옆)	아동,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	"
7. 설악중학교 옆 쉼터	교동 780-274 (리빙마트건너편)	야간 청소년 우범지역	"
		아동,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	"

7. CCTV 설치장소 : 10개소 19대

대 상 지	소 재 지	CCTV	촬영시간	비 고
1. 부영3단지 놀이터	조양동 1499-1	고정 1대	24시간	
2. 주공3차 주변	교동 961-2 (청초아파트 101동 옆)	고정 1대	"	
3.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	교동 1025-1 (해상공원 입구)	고정 2대		
4.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놀이터	금호동 482-5 (단지 놀이터)	고정 1대	"	
5. 영랑동 놀이터	영랑동 448-118 (구 영랑시장)	고정 2대		
6. 청초호 유원지	조양동 1544-2 (엑스포공원 분수대)	돛 1대 고정 2대	"	
7. 청초호유원지	조양동 1544-2 (엑스포공원 농구장 주 변)	돛 1대 고정 2대	"	
8. 엑스포타워	조양동 1544-2 (영재어린이집 옆)	고정 2대	"	
9. 설악중학교 옆 쉼터	교동 780-274 (리빙마트건너편)	고정 1대	"	
		고정 3대	"	

## 8. 의견제출

○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내에 “붙임”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(<http://sokcho.gangwon.kr>)로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 소 : 속초시 중앙로 183 (속초시 중앙동 469-6)

○ 전 화 : (033)639-2664

○ FAX : (033)637-1242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※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